

36
45

보고번호	회의차수	보고일자	보고자
206	27	1984.12.6	총재 최창락

보 고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개정

보고사항 기업자금조달을 직접금융으로 유도하고 리스회사의 대여용 국산시설재
구입을 위한 원화소요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여신
운용세칙을 개정하여 대기업 및 리스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채
보증한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기에 보고함

줄 전

당해기업 자기자본의 50%이내

개 점

당해기업 자기자본의 100%이내

다만, 리스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의
500%이내

보고관계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법규조항

제2조 (여신운용 및 부자지침)

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불건전한
여신 또는 부자채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
한다.

1-7. (생략)

8.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대출, 부자, 지급보증 및 인수업무의
취급기준과 용도별 한도의 준수

제4조 (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)

한국은행총재는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의 여신취급
기준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
한다.

참고사항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개정내용

「金融機關與信運用細則」 改正內容

現 行	改 正
第1條 ~ 第6條 (省 略)	第1條 ~ 第6條 (現行과 같음)
第7條 ① ~ ③ (省 略)	第7條 ① ~ ③ (現行과 같음)
④ 金融機關의 大企業에 對한 社債保證限度는 保證社債의 額面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當該企業 自己資本의 50 % 該當額으로 하며 各 金融機關은 同 限度에서 他金融機關 (非銀行金融機關 包含) 의 保證에 의한 社債發行實額을 差減한 金額範圍內에서 發行되는 社債에 限하여 保證할 수 있다. 다만, 既發行된 保證社債의 償還을 위하여 發行하는 社債에 對한 保證取扱에 따른 限度超過는 例外로 한다.	④ 金融機關의 大企業에 對한 社債保證限度는 保證社債의 額面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當該企業 自己資本의 100 % (「施設貸與並業育成法」에 의하여 設立된 施設貸與會社의 경우 500 %) 該當額으로 하며 (中 略) 한다.
第8條 ~ 第10條 (省 略)	第8條 ~ 第10條 (現行과 같음)
(新 設)	부 칙 이 細則은 1984.12.1. 부터 施行한다.